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교 통 약 자 의 이 동 편 의 증 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35호, 2020.12.22. 공포, 2021.06.23. 시행)되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시 장애인 단체 의견청취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여객시설에 무역항외에 연안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연안항을 추가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545호, 2020.10.20. 공포, 2022.10.21. 시행)되어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을 정함.

여객시설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하였으나,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외되어 있어,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동 지자체에도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필요

3. 주요내용

가. 기준적합성 심사를 위한 장애인 단체 의견청취를 할 때, 심사 대상 시설의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고, 의견제출기간(14일)을 부여 하여야 함 (안 제12조의2 신설)

나. 여객시설의 범위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고정건축물이 있는 연안항을 포함 (안 별표 1 개정)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으로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른 여객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을 정함 (안 제15조의4, 별표 1의2 신설)

라. 여객시설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안 제21조의3 개정)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으로 하는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안 별표 3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의견청취) ①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대상시설의 구조·용도·재질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및 도서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광역시장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을 개정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 표 부분을 개정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4 개정규정, 별표 1의2 개정규정, 별표 3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 및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1. 교통수단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바. 광역철도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2. 여객시설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사.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단, 연안항은 고정건축물이 없는 경우 제외한다.)
- 아. 광역철도의 역사

3. 도로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15조의4 관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6.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7.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고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교통행정기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통사업자,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통사업자,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줄이거나 늘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이상
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	10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100	200
다. 법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100	200
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100	200
마.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	10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의견 청취) ①</u>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대상시설의 구조·용도·재질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및 도서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u>②</u>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u><신 설></u>	<u>제15조의4(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u>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1조의3(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u>광역시</u> 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제21조의3(권한의 위임) ----- ----- ----- ----- ----- <u>광역시</u> <u>시장</u>은 ----- ----- -----.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안전복지과	
연 락 처	044-201-3868, 3871